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적합성에 관한 비교연구

오 원 석\*  
민 주 희\*\*

- 
- I. 서 론
  - II. 물품적합성 기준
  - III. 물품적합성의무의 면제
  - IV. 결 론
- 

주제어 : UN통일매매법, 영국물품매매법, 물품적합성

### I. 서 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분쟁의 대부분은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매매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준에 근거한 물품의 계약적합여부,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물품의 계약적합여부를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UN통일매매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로 칭함)은 국제적인 물품매매거래에 대한 통일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이 협약의 체약국으로 발효되었고 CISG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국제거래에서 CISG가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의 준거법으로 적용이 확대됨으로 CISG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계약적합여부의 판단기준을 고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영국은 CISG를 비준하고 있지 않아서 영국 거래상대방과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영국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이하 SGA로 칭함)을 준거법으로 선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더욱이 한국과 EU간의 FTA체결로 인해 국제매매계약이 활발해 질 것을 예상하여 SGA를 준거법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므로 SGA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CISG 또는 SGA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물품적합성의 기준과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하는 의무 면제에 대하여 CISG와 SGA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고찰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시 적절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물품적합성 기준

### 1. 물품적합성의 개념

#### 1) CISG

CISG는 매도인에게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부과

하고 있다.<sup>1)</sup>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인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하여 계약당사자들의 의도가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2)</sup>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면 매도인은 품질, 수량, 종류와 더불어 포장하는 방법까지도 계약내용에 따른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들이 달리 물품의 품질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CISG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첫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한 물품일 것, 둘째, 계약체결 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 물품일 것, 셋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한 견본 또는 모형의 품질을 보유한 물품일 것, 넷째, 그 종류의 물품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된 물품일 것 등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 2) SGA

SGA에서 계약책임을 조건(condition)과 담보(warranty)로 구분하고 있다. SGA 제11조에 의해 조건(condition)은 계약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의 위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물품수령거절권<sup>3)</sup>과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약관이다. 반면 담보(warranty)는 계약의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1) CISG 제35조. CISG 제35조는 부적합(non-conformity)이라는 통일된 개념(a unitary concept)에 기초하여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다루고 있어 대부분의 국내법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다루는 규정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SGA에서는 'condition'과 'warranties'로 구분하고 UCC에서는 'express and implied warranties'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2) Enderlein and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1992, p 141. 물품의 품질, 수량 및 명세에 대한 합의가 명시될 필요가 없다. 계약당사자들의 합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CISG 제8조에 의해 당사자들의 진술 또는 행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의 목적과 상황 그리고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조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심각한지와 관련 없이 매도인의 조건위반은 매수인에게 물품수령거절권을 부여한다, Lee, Byung Mun, *Buyer's Right of Rejection and Revocation of Acceptance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Compared with English Law*,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Vol. 28, 2005, p. 14.

와 관련된 것으로 조건(condition)에 비하여 덜 중요한 합의로서 이의 위반은 매수인에게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 한다.<sup>4)</sup>

SGA에서는 물품적합성에 관한 계약상의 조항들을 조건(condition)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설명서에 의한 매매인 경우 물품이 명세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설명서와 함께 견본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는 물품이 설명서 뿐 만 아니라 견본에도 일치하여야 한다.<sup>5)</sup> 둘째, 매도인은 만족스러운 품질(satisfactory quality)의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sup>6)</sup> 이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인 사람(a reasonable person)이 물품의 명세, 물품의 가격, 그리고 기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기준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sup>7)</sup> 셋째, 매수인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물품의 목적을 알렀다면 매도인은 그 목적에 합리적으로 적합한(reasonably fit)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sup>8)</sup>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 또는 판단에 의존하지 않거나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 3) 비교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CISG는 부적합(non-conformity)의 단일 개념으로 물품이 품질, 수량과 더불어 포장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GA는 묵시조건으로 품질, 수량 및 명세서와 견본에 의한 매매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CISG에서는 포장과 용기가 합의한 내용과 다를 경우 그 물품은 계약에 부적합한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SGA는 명시적으로 포장에 대한 적합성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만족스러운 품질 또는 합리적으로 적합한 물품인도에 대한 묵시조건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다.<sup>9)</sup> 따라서 물품포장의 하자를 담보의무의

4) Bence Graphics International Ltd v Fasson UK Ltd[1998] Q.B. 87.

5) SGA 제13조

6) SGA 제14조 제2항

7) SGA 제14조 제2A호

8) SGA 제14조 제3항

9) Geddling v Marsh[1920] 1 KB 668, Wilson v Rickett, Cockerill & Co.[1954] 1 QB 598.

위반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인 의무의 위반(a breach of an ancillary duty)으로 고려하는 다른 국내법들과 CISG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sup>10)</sup> CISG에서 포장 적합성에 대한 규정이 극히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할 지라도 그 위반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은 종래의 규정보다 크게 진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11)</sup>

## 2.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 1) CISG

CISG는 당사자간 합의<sup>12)</sup>한 품질, 수량에 일치하여야 함은 물론 물품의 성분을 표시한 명세가 있다면 그에 일치한 물품을 매도인이 인도하여야 함을 규정한다.<sup>13)</sup> 또한 용기 및 포장에 대해서도 물품적합성 판단의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제상거래에서 물품의 격지자간의 이동을 고려하여 용기나 포장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14)</sup> CISG가 계약과 다른 종류의 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물품적합성에 관한 원칙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sup>15)</sup>

### 2) SGA

물품의 수량적합성의 규정을 묵시조건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인도하여야

---

10)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2010, p. 574.

11)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1986, p. 16.

12) 당사자간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Ingeborg Schwenzer, *op. cit.*, p. 571; Enderlein and Maskow, *op. cit.*, p. 141.

13) CISG 제35조 제1항

14)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2002, p. 4.

15) Ingeborg Schwenzer, *op. cit.*, p. 574.

하며 부족분이나 초과분이 있을 경우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상관없이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매수인의 물품수령거절을 정당화하고 계약 해제에 이르게 할 수 있다.<sup>16)</sup> 인도된 물품의 수량이 계약에서 요구한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 매수인은 적게 인도된 물품을 수령할 수도 있고 혹은 거절할 수도 있다.<sup>17)</sup> 매도인이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량보다 많이 인도 한 경우에 매수인은 전량 거절할 수 있고 또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량만 수령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다.<sup>18)</sup> 마지막으로 인도된 전량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계약에서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경우 각각의 선적 분은 분리된 계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느 한 선적분이 계약위반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적분에 대한 수령거절 뿐 아니라 그 계약위반이 계약전체의 근간을 흔들기에 충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계약전체에 대한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sup>19)</sup>

또한 물품이 명세(description)에 의해 매매되는 경우 물품은 그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명세는 계약의 본질적인 것으로 계약에 영향을 주는 계약상의 조건(a contractive term)이 되어야 하며<sup>20)</sup> 인도되는 물품의 본질(the essence) 또는 동일성(the identity)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한정된다.<sup>21)</sup>

한편 물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명세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품질(satisfactory quality)을 갖춘 물품이 인도되었는지 고려된다.<sup>22)</sup> 만족스러운 품질은 물품의 상태(state and conditon)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물품이 사용되는 모든 목적에 적합성, 외관, 마감처리,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sup>23)</sup> 이러한 만족스러운 품질을 고려하는 기준은 상인인 매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

16) *Tamvaco v Lucas*(No 1) (1859) 1E&E 581(more); *Tamvaco v Lucas*(No 2) (1859) 1E&E 592(less); *Harland and Wolff Ltd v Burstall and Co* (1901) 6Com Cas 113(less).

17) SGA 제30조 제1항.

18) SGA 제30조 제2항.

19) SGA 제31조 제2항

20) 계약체결과정에서 제시되는 정보 또는 진술들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진술일 수도 있고 모든 명세가 조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Sweet & Maxwell, 2010, p. 538.*

21) *Ashington Piggeries Ltd v Chirstoper Hill Ltd* [1972] A.C. 441.

22) SGA 제14조 제2항.

23) SGA 제14조 제2B항.

되지만 물품의 명세를 통해 매매되는 경우에는 상인이 아닌 매도인과의 거래에도 적용가능하다. 매수인이 비상인인 매도인과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물품의 품질에 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SGA 제14조에 의한 만족스러운 품질이 아니라는 근거하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고 SGA 제13조에 근거하여 명세와 인도된 물품이 상이함을 근거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비상인인 매도인과 거래한 매수인은 명세와 불일치한 물품이 아닌 이상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인인 매도인과 거래한 매수인은 SGA 제13조 또는 SGA 제14조에 근거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 3) 비교

첫째, CISG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명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지 묵시적인 것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명료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한다.<sup>24)</sup> 그러나 SGA는 물품적합성에 관한 기준들을 묵시조건(Implied condition)으로 다루고 있어 CISG의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명세에 의한 매매의 경우 SGA에서 명세는 반드시 계약상의 조건(a contractive term)이 되어야 하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다루고 있다. 더불어 물품에 대한 명세는 물품의 본질(the essence) 또는 동일성(the identity)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한정시키고 있으나 CISG에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조항이 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지 않으며 명세의 범위도 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CISG가 물품의 품질과 명세에 대한 적합성의 기준을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SGA는 이들에 대한 기준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합리적인 사람이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물품의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SGA의 명세와 품질기준에 대한 구별에 따라 상인인 매도인 또는 비상인인 매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SGA가 수량적합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CISG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에 제공되지 않기에 해당 관습을 고려하여야 하며<sup>25)</sup> 매

24) Ingeborg Schwenzer, *op. cit.*, p. 571; Enderlein and Maskow, *op. cit.*, p. 141.

25) 신용장방식으로 거래되는 bulk cargo인 경우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UCP 600 제 30조.

수인의 구체권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sup>26)</sup>

### 3. 계약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 1) CISG

계약당사자들 간에 물품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다음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sup>27)</sup> 첫째, 계약에서 물품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통상적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sup>28)</sup> 여기서 통상적 사용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은 그러한 명세의 물품을(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물품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sup>29)</sup> 또한 통상적 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 물품에 정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결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sup>30)</sup>

통상사용목적적합성 기준이 평균적인 품질의 물품을 요구하는 것인지 혹은 판매적격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의 논란에 대해 네덜란드의 중재 판정<sup>31)</sup>은 계약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정당한 기대(the

---

26) CISG 제52조 제2항: 매수인은 초과수량을 인수하거나 수령거절 할 수 있고 또는 초과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 CISG 제73조: 물품을 분할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분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이 그 분할분과 관련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그 분할분과 관련하여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어느 분할분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분과 관련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으리라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장래 분할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7) 통상 매매당사자들은 원료는 가공을 위해, 기계는 생산을 위해, 그리고 물품은 재판매를 위해 구매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세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331.

28) CISG 제35조 제2항 a호

29) 임흥근 이태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삼지원, 1991, p. 120.

30) C.M Bianca and M.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e, 1987, p. 274.

31) 15 October 2002,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No. 2319: 다수의 매도인들은 네덜란드 대륙부의 해안가스발굴현장에서 탐사 및 생산활동을 전개하여 원유의 정제

justifiable expectation)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품질(reasonable quality)’이 적합한 기준임을 보여주었다.

물품의 통상사용목적 적합성을 판단할 때 물품이 소비자, 환경보호 및 물품의 안전등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공법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통 매도인 국가의 공법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에게 매수인 국가나 물품사용 국가의 공법규정을 일일이 알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sup>32)</sup> 그러나 매수인국가의 공법기준(public law standards)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3가지 예외적인 상황인 (1) 매수인 국가의 공공법규 및 규칙이 매도인국가에서 시행되는 것과 동일한 경우,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러한 규정을 고지한 경우, (3) 매수인국가에 매도인의 지점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법규 및 규칙을 알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국가의 공공법규 및 규정에 충족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sup>33)</sup>

둘째, 특정사용목적이 계약체결 당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졌다면 매도인은 그 특정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sup>34)</sup> 특정사용목적이 매도인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졌다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사용목적이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진 경우 합리적인 매도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 목적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sup>35)</sup> 결국 매도인이 특정목적에

및 석유제품 과 가스의 유통에 종사하는 메이저 회사들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Rijn Blend라고 불리는 원유(crude oil)와 혼합농축액(condensate)의 매매였다. 인도된 Rijn Blend에 최종 소비자에게 가공의 문제를 야기할 만한 수은의 함유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여 매수인은 다음 인도 분의 수령거절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매도인은 계약서에 물품의 특정품질요건이 없었고 매수인이 사용할 특정 목적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은 계약에 부적합하며 매도인은 Rijn Blend가 사용되어질 특정목적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중등품질조건(average quality)과 적상성조건(merchantability quality)을 제외하고 제35조 제2항 a호를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인 품질(reasonable quality)기준을 적용하였다.

32) 허광욱, CISG 제35조(1)·(2)항의 실무적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소고,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3권, 2009, p. 90.

33) New Zealand Mussels Case, 8 March 1995, German Supreme Court, VIII ZR 159/94.

34) CISG 제35조 제2항 b호.

35) Ingeborg Schwenzer, *op. cit.*, p. 581.

대하여 실질적으로 인식(actual knowledge)하여야 하는 것과 무관하기에 매수인은 계약체결 시에 특정사용목적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주는 것이 현명하다.<sup>36)</sup>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특정사용목적에 알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신뢰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특정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sup>37)</sup> 매도인이 특정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에 전문가이거나 매도인이 매수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신뢰가 존재할 것이다.<sup>38)</sup>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과 동일하게 혹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인의 기술 또는 판단을 신뢰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sup>39)</sup>

셋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모형을 제시하였다면 견본 또는 모형은 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도인은 그것의 품질을 보유하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sup>40)</sup> 만일 견본이나 모형이 물품의 품질기준으로 계약에 명시된 경우는 제35조 제1항에 적용되지만 견본 또는 모형이 명시조건이 되지 않은 채 제시된 경우에 제35조 제2항 C호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견본은 인도될 물품 중에서 선택되어 제공되는 것인 반면 모형은 실제 제공될 물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입수가 불가능하여 모형을 통해 매수인에게 검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sup>41)</sup> 결국 매도인이 견본을 제공하였다면 매도인은 견본의 모든 품질을 가지는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모형을 제공하였다면 모형이 보유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요구될 것이다.<sup>42)</sup> 계약상에 명시된 명세와 견본 또는 모형의 품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의 기준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면 물품은 계약상의 명세와 견본 또는 모형의 품질 모두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sup>43)</sup> 그러나

36) *Ibid.*

37) CISG 제35조 제2항 b호 단서 조항.

38) Ingeborg Schwenzer, *op. cit.*, p. 582.

39) 12 December 2006, Landgericht Coburg, 22 O 38/06.

40) CISG 제35조 제2항 c호

41) Ingeborg Schwenzer, *op. cit.*, p. 583.

42) *Ibid.*

계약상의 명세와 견본 또는 모형의 품질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어느 품질을 우선하여야 하는지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각각의 사건들 통해 계약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sup>44)</sup> 만일 견본 또는 모형이 매수인의 특별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견본 또는 모형에 일치하는 물품을 매도인이 제공하였다면 특별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 의무는 없을 것이다.<sup>45)</sup> 이는 매수인이 견본 또는 모형을 검사 또는 시험사용 할 기회를 가진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 또는 판단을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계약당사자들 간에 포장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물품은 동일한 물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하고 통상적인 방법은 거래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포장의 통상적인 방법에 대한 관행이 없는 경우 포장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물품의 특성, 운송기간, 운송형태 그리고 기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sup>46)</sup> 또한 운송 중에 물품 자체의 손상 없이 포장만 훼손된 경우, 포장의 목적이 운송 중에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포장적합성에 대한 의무의 위반에 이르지 않는다.<sup>47)</sup> 그러나 포장이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또는 가방과 같이 전매를 위한 영구포장의 경우, 포장의 부적합으로 운송 중에 물품이 손상되었다면 그러한 손상이 위험이전 이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sup>48)</sup>

## 2) SGA

SGA는 CISG와 달리 물품적합성의무에 대한 조항들을 묵시조건(Implied Condition)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ISG의 물품적합성의무의 구분과 다를지라도 CISG의 분류기준에 따라 SGA의 규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SGA는 물품의 품질적합성을 고려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상인인 매도인이 그러한 종류의

---

43) *Ibid.*

44) Frames for mountain bikes case, 11 March 1999, Austria Supreme Court, 2 Ob 163/97b

45) Ingeborg Schwenzer, *op. cit.*, p. 583.

46) *Ibid.*

47) *Ibid.*

48) *Ibid.*

물품이(goods of the kind) 일반적으로 구매되는 모든 목적에(all the purpose)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9)</sup>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러한 종류의 것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목적 중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품질을(satisfactory quality) 지닌 물품이 될 수 없다. 한편 물품이 수입국의 국내법규에 충족하여야 하는지의 쟁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모든 수입국가 혹은 매수인이 전매할 국가의 모든 법을 인식하는 것을 불합리하며 이는 매수인의 인식영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없다.<sup>50)</sup>

둘째, 특정사용목적 적합성의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특별사용목적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인인 매도인에게 알렸다면 그 목적에 합리적으로 적합한(reasonably fit for that purpose)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sup>51)</sup> 합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의미는 물품이 그러한 목적에 절대적으로 적합할 것을 매도인이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sup>52)</sup> 만일 중고차매매에서 매수인이 이를 구매시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중고차는 그의 사용목적에 합리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의 오용으로 인한 결과(the results of misuse)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sup>53)</sup> 한편 매수인이 특별사용목적에 대하여 매도인의 기술 또는 판단을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셋째, 견본적합성과 관련하여 비상인인 매도인과의 거래로 적용범위가 확장된다. 견본에 의한 매매일 경우 물품은 견본의 품질과 일치하여야 하는 명시조건 또는 묵시조건이 있다.<sup>54)</sup> 견본과 일치하여야 하는 정도는 계약에 따라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인도된 물품과 견본의 품질비교에서 단순히 시각적 비교만을 요구한다면 본질적인 성질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은 계약위반에 이르지 아니한다.<sup>55)</sup> 그러나 견본의 합리적인 검사

49) SGA 제14조 제2B항

50) Summer Permain & Co v Webb & Co Ltd (1992) 1 KB 55.

51) SGA 제14조 제3항

52) M Bridge, *op. cit.*, p.569.

53) Balmoral Group Ltd v Borealis(UK) Ltd [2006] EWHC 1900 (Comm).

54) SGA 제15조

55) F E Hookway & Co Ltd v Alfred Isaacs & Son [1954] 1 Lloyd's Rep. 228.

(reasonable examination)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하자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이어야 하며 합리적인 검사를 통하여 발견되지 않는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을지라도 만족스런 품질의 기준을 상실할 정도의 잠재하자(latent defects)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sup>56)</sup> 계약에서 물품이 명세뿐만 아니라 견본과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면 물품이 견본에만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sup>57)</sup> 따라서 물품은 명세와 견본 모두에 일치하여야 한다.

### 3) 비교

첫째, 통상사용목적 적합성의 의무와 관련하여 CISG는 계약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물품적합성의 기준으로 다루고 있지만 SGA는 통상사용목적 적합성의 의무가 품질적합성의 의무의 판단을 위한 목시조건들 중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SGA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목적(fit for all the purpose)에 적합할 것을 강조하여 모든 사용목적들 중 어느 하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매도인이 인도한다면 매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물품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CISG에서는 모든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대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fit for the purpose)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그러한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서<sup>58)</sup> 자신의 의무위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어 CISG에서도 사용목적이 여러 가지일 때는 물품이 그러한 모든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사용목적 적합성의 판단을 CISG는 동일한 명세(description)를 기준으로 하지만 SGA는 동일한 종류(kind)를 기준으로 한다. 옥수수의 거래목적이 식용인지 가축용인지에 따라 품질적합성의 기준은 다르다. 옥수수를 가축용으로 거래할 때 식용의 옥수수를 동일한 종류로서 인식하여 동일한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동일한 종류로 판단기준을 삼는 것은 그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 따라서 CISG와 같이 동

56) M Bridge, *op. cit.*, p.582.

57) SGA 제13조 제2항

58) Secretariat's Commentary, Art 33, No5.

일한 명세를 기준으로 통상사용목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더 명료할 듯하다.<sup>59)</sup>

둘째, 특정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CISG와 SGA 모두 매수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매 물품의 특정사용목적에 알려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CISG는 특정사용목적에 적합한(fit for the purpose) 물품을 요구한다면 SGA는 특정사용목적에 합리적으로 적합한(reasonably fit for that purpose)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적합한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에게 엄격히 특정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매도인이 특정사용목적 적합성의무를 이행하였음이 CISG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셋째, 견본에 의한 매매의 경우 그 적합성기준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SGA는 비상인인 매도인에 의한 매매에도 적용되므로 소비자거래에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지만 CISG의 경우에는 국제상거래를 기초로 하고 있다. CISG는 견본에 의한 매매로 계약상 명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SGA는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CISG에서 견본과 모형을 구분하여 명시한다면 SGA는 이와 달리 특정물과 불특정물에 대하여 별도의 구분없이 견본으로 명시하나 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없는 듯하다. SGA에서 견본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불만족스러운 품질에 이르게 하는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에 있어 만일 하자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이 하자가 만족스러운 품질의 기준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견본에 일치한 물품의 인도로 인정되므로 매도인의 책임범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CISG는 견본에 의한 매매에서 견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품질이 인도되는 물품에 드러나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며 모형을 전제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불특정물의 특성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적합성여부가 판단되므로 매도인의 의무이행의 판단기준이 애매 모호하게 된다.

---

59) 오원석, 이병문,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성물품 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7권, 2008, p. 16.

### Ⅲ. 물품적합성의무의 면제

#### 1. CISG

첫째,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은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sup>60)</sup> 명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매수인은 그러한 불일치가 있는 물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이기에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주장할 수 없다.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을 경우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매도인은 물품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알았어야 하는’(ought to have known)은 계약당사자가 조사 (investigation)나 문의(inquiry)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을 의미하고 ‘모를 수 없었던’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은 바로 볼 수 있는 사실이기에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sup>61)</sup> 매수인은 계약체결 전에 물품을 검사할 의무가 없으나 매도인이 단순히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매수인에게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능성 있는 하자에 대한 언급과 함께 물품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매수인은 검사를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물품 부적합에 대하여 인지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의 물품적합성의무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sup>62)</sup>

둘째,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제35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는 제8조에 의한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판단되지만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는 CISG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유효성의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 정해진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계약당사자들이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

60) CISG 제35조 제3항

61) John O Honnold, *op. cit.*, p. 339.

62) Ingeborg Schwenzer, *op. cit.*, p.586.

하는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준거법에 의해 그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2. SGA

첫째, SGA에서 만족스러운 품질의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는 계약체결 전에 그러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인지한 경우에 매도인의 의무는 면제된다.<sup>63)</sup> 매도인이 만족스러운 품질을 저해하는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에게 알린 것만으로 매수인이 그러한 하자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sup>64)</sup> 따라서 특정 하자의 명확한 확인을 통해 매수인이 그러한 하자를 충분히 인지하여야만 매도인은 만족스러운 품질의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체결 전에 물품을 검사하고 그러한 검사를 통해 불만족스러운 품질을 야기하는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만족스러운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sup>65)</sup> 매수인에게 물품을 검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매수인이 단순히 물품을 검사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매도인의 만족스러운 품질의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sup>66)</sup> 즉 매수인의 검사는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완전한 검사가 이루어짐으로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만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부주의한 검사를 통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만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sup>67)</sup>

둘째, 계약당사자들은 만족스러운 품질의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sup>68)</sup> 그러나 당사자들간의 배제합의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63) SGA 제14조 제2C항 a호.

64) Bramhill v Edwards [2004] EWCA Civ 403.

65) SGA 제14조 제2C항 b호.

66) SGA 1893에서의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검사를 불충분하게 하여 불만족스러운 품질을 야기하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이 검사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도인의 만족스러운 품질의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67) Bramhill v Edwards [2004] EWCA Civ 403.

68) SGA 제55조 제1항.

### 3. 비교

첫째,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CISG는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경우 제35조의 물품적합성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인의 의무를 면제하는 반면에 SGA는 물품적합성의무에 관한 기준들 중에서 만족스러운 품질의 기준과 관련하여서만 매도인의 면책을 인정한다.

CISG와 SGA는 모두 계약체결전에 매수인에게 물품검사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CISG는 물품검사에 대하여 SGA보다 덜 엄격하게 해석하는 듯하다. 계약체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통지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물품검사를 요청한 경우 매수인이 실제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적합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SGA는 계약체결 전에 매수인이 검사를 통하여 하자를 발견한 경우만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즉 매수인이 검사를 하였어도 하자를 발견하지 못 했다면 매도인은 계속해서 물품적합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SGA를 기초로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CISG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듯 하다.

둘째,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매도인의 물품적합성의무가 배제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CISG와 SGA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나 CISG는 그러한 유효성에 대하여 다루지 않고 국제사법에 의해 정해진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SGA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의 유효성의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 IV. 결 론

이상에서 매도인의 물품의 계약적합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적합성의 기준과 계약적합성 물품인도의무의 면제에 대하여 CISG와 SGA의 규정을 비교 검토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비교 검토한 사항들을 토대로 실무상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SGA는 물품적합성기준에 관한 각각의 규정마다 비상인인 매도인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므로 각각의 규정마다 적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CISG는 상거래를 목적으로 물품적합성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각각의 규정마다 적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SGA의 경우 거래주체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SGA를 준거법의 선택할 경우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명세를 기초로 이루어진 계약에 있어서 SGA에서는 명세에 의한 매매일 경우 반드시 그 명세가 계약상의 조건(a contractive term)이어야 하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다루고 그 명세는 물품의 본질(the essence) 또는 동일성(the identity)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CISG는 명세에 의한 매매 시에 SGA와 같은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SGA를 준거법으로 선택할 때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로서 명세가 계약상의 조건이 되도록 유념 하여야 하며 명세의 범위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통상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SGA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목적에 적합할 것을(fit for all the purpose) 강조하여 모든 사용목적들 중 어느 하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의무위반에 이르게 된다. 반면 CISG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fit for the purpose) 규정하고 있어 SGA의 규정보다 매도인의 책임이 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그러한 목적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은 거래대상물품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CISG는 동일한 명세(description)를 기준으로 하지만 SGA는 동일한 종류(type)를 기준으로 한다. 종류를 기준으로 통상사용목적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명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비하여 그 해석의 모호함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특정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CISG와 SGA는 매도인이 특정사용목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인식(actual knowledge)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계약체결 시에 특정사용목적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견본에 의한 매매와 관련하여 SGA에서 견본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하자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이 하자가 만족스러운 품질의 기준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견본에 일치한 물품의 인도로 인정되므로 매도인의 책임범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CISG는 견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품질이 인도되는 물품에 드러나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며 모형을 전제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적합성여부가 판단되므로 매도인의 의무이행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된다. 따라서 견본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인은 견본에 일치하는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또한 모형에 의한 매매에서는 적합한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의 책임면제와 관련하여 CISG는 계약체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통지하면 매수인이 실제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적합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SGA는 계약체결 전에 매수인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만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가 면제가 된다. 따라서 SGA를 기초로 매도인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CISG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111권, 1986,
-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2002.
- 오원석, 이병문,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성물품 인도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7권, 2008.
- 임홍근 이태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삼지원, 1991.
- 허광욱, CISG 제35조(1)·(2)항의 실무적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소고, 한국 무역상무학회지, 제43권, 2009
- C. M Bianca and M.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e, 1987.
- Enderlein and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1992.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2010.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 Lee, Byung Mun, Buyer's Right of Rejection and Revocation of Acceptance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Compared with English Law,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Vol. 28, 2005
-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Sweet & Maxwell, 2010.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ormity of Goods in the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ed on comparing CISG with SGA

**Oh, Won Suk**  
**Min, Joo Hee**

This study describes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analyze the seller's principal duty, compa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with Sale of Goods Act(SGA) and to provide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contracting parties who consider CISG or SGA as a governing law.

This paper first considers the requirements for the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which means contractual requirements agreed between parties and implied requirements not agreed between parties. Following this, the exclusion of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required by the contract is described. Finally, this paper ends up giving contracting parti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Key Words: CISG, SGA, The Conformity of Goods